

『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국내 최대의 첨단산업 및 수출기지로서 국가경제발전과 오늘의 구미발전을 있게 한 기업의 중요성 인식 및 지원토대를 마련하고
- 기업의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으로 “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”를 만들어가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펼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『기업사랑위원회』 설치(안 제5조)
 -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
 - 시의회 의원,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, 법조계, 학계, 금융계,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위촉
- 『기업의 날』 지정·운영(안 제9조)
 - 공장신축 준공일, 우수 신제품 발표일, 지역사회 공헌일 등 기업의 특별한 기념일을 『기업의 날』로 지정 홍보
 - 기간은 10일 이내로 지정 운영
- 최고기업인상, 산업평화상 등 시상(안 제10조, 제11조)
 - 올해의 최고기업인상, 이달의 최고기업인상 각 1인 시상
 - 올해의 최고근로자상, 이달의 최고근로자상 각 1인 시상
 -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 및 기업인 각 1인 시상

- 기업 등 예우대상(안 제12조)
 -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장관표창 이상,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, 최고기업인상,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등 대상
 - 수여 받은 날부터 3년간 예우
- 『중소기업사이버지원센터』 운영(안 제17조)
 -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인프라 확충, 무역정보, 기업지원정보 등 종합정보 제공
- 『기업애로상담관제』 운영(안 제29조)
 - 기업애로지원센터에 『기업애로상담관』 위촉 운영
 -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, 유관기관·단체 인사 등을 위촉
 - 기업애로·건의사항 유관기관 협조 및 제도개선 건의 등

4. 참고사항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
- 「산업발전법」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- 「구미시 중소기업육성 및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이나, 종사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

- 기업사랑 운동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, 기업의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며, 최고 기업인상, 최고 근로자상 등을 마련하여 기업 종사자가 존경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
-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예우를 하도록 하고 기업의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, 벤처기업육성 시책 추진,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, 산·학·연 협력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음.
- 또한 기업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위해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가 기업의 경쟁력을 배가 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.